

2024년 금정구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시행 공고

부산광역시 금정구와 지방소멸대응 사업 수행기관인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상패 수여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「금정구 일자리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시행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금정구 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24. 8. 23.

금 정 구 청 장
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

1. 신청대상

- 공고일 현재 금정구 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
일자리 증가율, 근무 환경, 기업 경영성이 우수한 기업
 - ▷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(공고일 기준 '21. 8. 1. 이전 설립 기업)
 - ▷ 금정구 내 소재한 사업장(본사, 지점, 제2공장 등 불문)
 - ▷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
 - ▷ 고용 증가(고용보험 가입자 기준) 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

구 분	신 청 조 건
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	최근 1년간 일자리증가율 5% 이상
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	최근 1년간 일자리증가율 5% 이상 또는 근로자 증가 인원 5명 이상
근로자 50인 미만 기업	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 인원 3명 이상

※ 일자리 증가율(%) : (24.8.1.자 근로자수-23.8.1.자 근로자수) / 23.8.1.자 근로자수 × 100

신청 제한

■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 제외

- ▶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
- ▶ 최근 3년(2021~2024년)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기(既) 선정 기업
- ▶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 등에 의거 체납 기업(접수 마감일 기준)
- ▶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, 임금 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▶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
- ▶ 동일그룹으로 인수합병 또는 인력이동을 통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
- ▶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▶ 게임, 도박,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

2.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: 3개사 선정 및 상패 수여, 재정적 지원 등

지원내용	세부내용
■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재정적 지원 ※ 24년 12월까지	근무환경개선비(근무환경 쾌적화 등), 근로자 사기 양양(교육비, 건강검진비 등) 최대 1천만원 ※ 지출증빙 서류확인 후 사후 지급[사용계획서 제출]
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	금정구 홍보매체(홈페이지 및 소식지, SNS 등)
■ 상패 수여	

※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근무환경개선자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,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서 재정적 지원 가능

3. 신청 및 접수

○ 신청기간: 24. 8. 23.(금) ~ 9. 13.(금) 18:00까지

○ 신청방법: 신청서 메일 bsef-geumjeong@bsef.kr 송부

- 1) 금정구청 홈페이지(www.geumgeong.go.kr)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
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(bsef.or.kr)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
- 2)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메일로 신청서 발송(압축파일)

○ 문 의: 부산경영자총협회(☎051-741-1153 / 051-647-0915)

4. 제출 서류

○ 금정구청·부산경영자총협회 신청 서식 참조

연번	서식	신청서류 명
1	별첨1	2024년 금정구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신청 서식(1~6)
2	-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및 세무서 발급본
3	-	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- 국세 납세증명서 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후, '민원증명' 메뉴를 통해 발급 - 지방세 납세증명서 - 정부 24(www.gov.kr)에서 로그인 후, '지방세 납세증명서'를 검색하여 발급
4	-	공장등록증(또는 건물등기부등본) 사본 각 1부 ※ 법인사업자의 경우, 법인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제출 - 공장등록증은 정부 24(www.gov.kr) 또는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발급 가능 - 건물등기부등본은 등기에서 발급 받거나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
5	-	중소기업확인서 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://sminfo.mss.go.kr 에서 발급하거나 가까운 중소기업청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
6	-	최근 2년간 재무제표('22년, '23년) 각 1부 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본
7	-	23년 신규 고용보험가입자 근로계약서 전체
8	-	기업 신용평가서(신청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) 1부 - 한국신용평가 kisrating.com 에서 발급본 - 나이스신용평가 niceinfo.co.kr 에서 발급본
9	-	고용보험가입자명부('20.12.31,'21.12.31,'22.12.31,'23.12.31,'24.08 발급분) 각 1부 ※ 12.31일 기준 발급: 기준일자~기준일자(ex. 2023.12.31.~2023.12.31.로 발급) ※ 조회기간 검색시 현취득자 체크X ※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(total.comwel.or.kr)
10	-	- 기타 신청서 작성부분 관련 실적 증빙자료 일체
※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으로 함.		

5. 심사 및 평가

○ 항목별 배점 평가 기준에 의한 심사 ▷ 3개사 선정

분 야		배점	평가 항목
정량평가 (90점)	일자리 성장성	25점	· 평균 고용증가인원(15), 평균 고용증가율(10)
	일자리 질	30점	·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(5), 직원 복리후생(5), 직원 역량강화(5), 장기근속률(5), 정규직채용 비율(10)
	경영의 건전성	20점	· 사업영위기간(10), 기업 경영상태(10)
	청년채용	10점	· 청년 채용 비율(10)
	취약계층 채용	5점	· 장애인 채용 비율(5)
정성평가(10점)		10점	· CEO 의지(비전,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) 및 특허 인증, 사회공헌활동 등 ※ 필요시, 현장방문 또는 언론보도 등 종합 검토

6. 선정 취소

-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되었거나,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선정
이전 또는 이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 취소

7. 선정 및 통보 ※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- 선 정: 24. 10월 중 예정
- 결과통지: 최종 선정 후 금정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- 재정적 지원(정산): 24. 12월 한

8. 기타사항

-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, 제출된
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※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
-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
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, 노동법 등 위반 문제로 행정적, 형
사적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

- 고용창출 우수기업 자격요건, 지역(금정구 외 지역)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각종 증명(빙)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탈락 및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
-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금정구 및 부산경영자총협회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

9. 문 의 처

- 금정구 일자리경제과(☎ 051-519-4855)
- 부산경영자총협회 지역일자리팀(☎ 051-741-1153 / 051-647-0915)